



住民카드事業説明資料

'97. 4

内 務 部
濟 州 道

住民카드事業説明資料

'97. 4

内務部
濟州道

附 表

普通 居民 登記 簿

區 別 登記 簿

戶 籍 登記 簿

戶 籍 簿

戶 籍 簿

I. 住民카드事業 基本方向

① 住民카드發給은 國民便宜를 최우선 考慮

- 現行 住民등록증은 '83년 일제경신이후 14년이 경과되어 신분 확인이 곤란할 뿐만아니라 위조, 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일제경신이 필요한 시기에
- 現재 각 개별법에 의거 발급 사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의료보험증, 국민연금증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, 지문의 7가지기능을 하나의 카드에 수록하여
- 다기능 주민카드를 발급함으로써
 - 연간 1억7천만통의 주민등록등·초본 및 인감증명서의 감축과 운전면허증, 의료보험증, 국민연금증서 등의 통합운영으로 연간 수천억원 정도의 비용을 절약하고
 - 일선행정기관의 증명발급 종사인력을 국민복지 및 환경 분야 등 새로운 행정업무로의 전환이 가능하며
 - 의료보험증의 경우, 세대원이 각각 가질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시기에 쉽게 의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
- 주민카드 사업은 다가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“국민 종합복지카드”로 국민편의를 대전제로한 사업임

② 個人情報保護對策 力點推進

○ 주민카드에 수록된 정보의 내용은 분야별로 법으로 정한 운영자만 관리하도록 제도적·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본인과 분야별 운영자만 해당자료를 열람·수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자료의 임의사용을 엄격히 방지

• 주민등록사항, 인감은 읍·면·동 담당공무원

• 운전면허증은 면허시험장 담당공무원 및 교통경찰관

• 의료보험사항은 의료보험기관, 병·의원, 약국

•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업무 담당자

○ 주민카드 관리·운영상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의 불법유출에 대비하여

• 전산망은 독립된 폐쇄망을 사용하고 방화벽을 설치하여 제3자의 도청, 무단복제, 내용변경 등을 방지하고

• 내부 업무담당자의 부정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처리내역, 처리시간, 담당자 인적사항을 컴퓨터에 의해 자동으로 기록·보관

• 자료의 불법유출시 처벌규정도 엄격히 적용

※ 3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

③ 情報集中 防止

○ 주민카드 일제경신 초기에 전국민의 카드발급을 위한 기간 단축과 개인별 자료일치를 위해 종합자료망의 일시적 구축이 불가피하지만 일제경신이후 신규·재발급시에는 점차 관련기관의 전산망 자료를 통보받아 처리하고, 저장된 자료는 카드발급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기술적 장치도 개발 설치

○ 제도적으로는 주민등록자료의 집중에 대한 우려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개정 주민등록법제17조8의 규정에 “일제발급후 자료분산관리” 규정과 “주민카드발급센터의 자료보관 상황을 열람”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등 주민 사생활보호를 위한 자료관리에 철저

④ 國民的 共感속에 事業推進

○ 주민카드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민여론, 국회 논의, 전문가 토론, 공청회 등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적 공감대 속에 추진

II. 住民카드 事業計劃

① 추진배경

가. 주민등록증 경신 필요

□ 주민등록증 경신시기 경과

- 우리나라는 '68년 이후 평균 8년을 주기로 주민등록증을 경신하여 왔으나 현행 주민등록증은 14년이 지남
- 현 주민등록증은 훼손되거나 마멸되고 사진의 탈·변색과 용모변화 등으로 주민등록증만으로는 신분확인이 곤란하여 증 본래의 역할 수행이 곤란

□ 위·변조가 용이하여 각종 범죄에 악용

- 신분증의 사진, 기재내용 등을 변조하여 여권위조, 경제범죄, 미성년자의 유흥가 출입 및 고용, 범법자의 신분위장 등에 악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
- '83년 이후 분실된 주민등록증이 2천만건에 달해 사회안녕 질서 유지와 국가안보 취약

□ 기능이 단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신분증

- 상시소지 의무의 중요성에 비해 기재내용이 단순하여 이용 용도가 미흡하고 인적사항이 동일한 각종 휴대증명의 통합의견 대두
- 제증명의 국가공증시대에서 증명정보의 휴대화로 전환 필요
- 휴대증명의 다양화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증명제도 도입

나. 경제수준과 정보화시대에 부합되는 신분증 도입

□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전자카드로 통합

- 현재의 종이증명시대에서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전자신분증 시대로 전환
- 국민편의와 행정의 능률향상을 위해 국민에게 가장 필요한 각종 증명을 하나로 통합

□ 정보의 개인 휴대화

-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 등 사회생활에 가장 필요하고 수요가 많은 증명내용을 전자카드에 수록
 -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 연간 발급건수 : 1억7천만통
- 읍·면·동에서 발급하던 증명을 전자카드로 대체하여 국민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도모

□ 정보화시대의 전자열쇠

- 정보화시대에 제반 민원처리는 무인, 재택으로 전환될 것이며,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전자매체 필요
- 각종 신고서 처리, 컴퓨터 통신, 전자거래 등 사회·경제 활동의 근간으로 전자신분증 활용

다. 정보산업 육성과 국가 경쟁력 제고

□ 작고 효율적인 정부 구현

- 국가 경쟁력 제고와 국민에 대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보다 적은 비용으로 국가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정부 구현
- 제증명 발급제도의 개선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인력의 효율적 운영체제 확보

□ 국민의 삶의 질 향상

-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제증명 발급제도의 획기적 개선
- 다기능 전자카드의 보급으로 국민들의 정보마인드 확산과 증명의 다용도 활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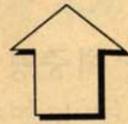
□ 정보산업의 발전계기 마련

- 2천년에는 IC카드 시장이 총 3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분석
- 고부가가치의 비메모리 반도체산업 육성 계기 마련
 - ※ 전세계 반도체 생산량 중 비메모리분야가 72% 차지

② 추진목표

민원행정의 세계화

- 국민편익 도모
- 행정의 능률화
- 세계화 전략에 기여
- 정보화 사회의 실현
- 국내 정보산업 육성



'99년 주민카드 실용화

- 주민카드 발급센터 구축
- 사회전반의 주민카드 운영망 구축
- 17세이상 3,400만명의 주민카드 발급
 - 국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증명을 주민카드로 통합

③ 추진방침

□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증명을 주민카드로 통합
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의료보험증, 국민연금증서,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 등 통합

□ 사업은 4개년 계획으로 추진

- '96년 : 발급센터 구축 및 업무개발
- '97년 : 종합데이터베이스 및 운영망 구축
- '98년 : 주민카드 발급 및 시험운영
- '99년 : 실용화

□ 예산은 비용 / 편익을 감안, 기관별로 분담

- 발급센터 구축 및 전자카드 제작·발급은 국비와 지방비
- 운영망 구축비는 기관별로 부담, 국민편익 부분은 국비 추진

□ 추진체제 확보

- 추진협의회가 주민카드 발급 관련 최고 심의기관이 되어 주요 계획을 심의하고 종합 조정
-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관리를 위해 업무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 기획단 설치·운영
- 전자카드 기술자문 및 감리를 위해 감리기관 지정·운영
- 전자카드 제작 및 발급 전담기관 지정·운영

□ 주민카드는 전자카드로 제작

- 현행 주민등록증의 단순기능, 위·변조 등의 제반 문제점을 해결하고 통합증으로서의 다목적 기능 구현이 가능한 최신 기술의 전자카드를 이용
- 사후 관리 및 IC 칩의 안정적 확보와 국내산업 육성, 국가 보안유지 등을 고려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칩을 사용
- 제작과정의 철저한 보안유지 및 위·변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기관에 일괄 위탁하여 제작
- 사진,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인적사항은 외부에 기록하고 IC칩 내부에는 주민등록사항, 운전면허사항 등 각 업무별로 영역을 구분하여 증명내용 기록

□ 통합증은 업무별로 독립적 증명기능 수행

- 기존의 단순 신분확인용에 부가하여 개인의 주민등록사항을 주민카드에 수록, 휴대증명으로 사용토록 함으로써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제도의 완전개선
 - 연간 주민등록등·초본 발급량 : 약 1억2천만건
- 읍·면·동에서 발급하여 사용하던 인감증명서를 주민카드에 수록된 인감으로 대응
- 통합신분증을 이용하여 운전면허 자격확인과 교통위반범칙금 납부통고서 발부관련업무를 신속·정확하게 처리
-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의 자격확인을 통합신분증으로 처리

□ 최신의 개발기술을 응용하여 업무개발

- S/W는 전체 전산망의 일관성 유지와 보안성 및 개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전산망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발
- 개발환경은 정보통신의 발전추세에 부응하고 국내 S/W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성이 입증된 최신 환경으로 구축
- 발급센터에는 통합자료의 구축 및 운영 S/W, 주민카드 발급기와의 연동프로그램, 발급 프로그램 등을 개발·설치
- 읍·면·동에는 발급센터와의 통신을 위한 프로그램 및 사진, 지문, 인감자료를 입력·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개발·설치
- 경찰청, 의료보험보험자,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관련기관에는 주민카드 발급·갱신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설치

□ 주민카드를 활용하기 위한 사회적 기반 구축

- 여러가지 증명이 통합된 증을 휴대증명으로 활용하고 본인확인과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 등 제증명을 대체하기 위한 행정기관, 민간단체 등 사회전반의 운영기반 구축
- 휴대용 면허확인기를 이용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및 운전면허 소지여부 확인
- 의료보험보험자는 의료보험 자격, 징수, 급여관리 등의 업무에 활용하고 병·의원, 보건소, 약국 등 의료보험취급 요양기관에서는 자격확인, 진료기록의 색인카드로 활용

□ 최신의 고난도 보안기술 적용

- 발급센터는 국민의 중요한 기본정보를 보유하게 되므로 철저한 보안체계를 확보하되 국가보안목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, 장비설치공간에 대한 접근통제, 자연재해에 대비한 기기설치 및 건물설계·구축, 경보장치의 설치, 외래자에 대한 경비체계 구축 등을 통한 시설물 보안체계 확립
- 전산망보안과 비허가자의 접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신망은 별도의 독립된 폐쇄망으로 구축하고, 전산시스템은 다양한 시스템 통제 기능을 구현하여 보안체제 강구
- 카드내 정보는 보안알고리즘과 전자카드의 보안키 관리개념을 도입하여 위·변조 및 불법사용을 최대한 방지
- 카드표면에 특수 인쇄기술을 적용하여 도안을 설계하고 사진, 문자의 위·변조 방지장치를 하되 IC내부에는 업무별로 분리·저장하고, 개인비밀번호를 부여하여 타인사용을 방지하되 관련 기관은 해당자료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제작

④ 주민카드 수록항목

분 야	항 목
계	35개 항목
주 민 등 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성명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사진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주민등록번호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주소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호주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세대사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병역사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주민등록 기관코드
운 전 면 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면허종류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면허번호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발행기관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면허조건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적성검사기간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교부일자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정지여부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면허상태
의 료 보 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보험자기호 및 명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관리번호 <li style="width: 50%;">• 보험자구분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피보험자사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피부양자사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진료지역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유효기간
국 민 연 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초취득일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가입종별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총가입월수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급여종별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수급증서번호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종수록일 <li style="width: 50%;">• 가입상태 <li style="width: 50%;">• 최종보험료납입유무
인 감	• 인감(선택)
지 문	• 지문
발 급 기 관	• 발급기관장

① 추진경위

주민카드사업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인근 시·도가 없고 인구가 적은 지역을 선정 주민카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기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미흡한점을 조기보완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금년 2월에 “주민카드추진협의회” 심의를 거쳐 확정.

② 사업개요

○ 추진기간 : '97. 1~'98. 9월

○ 카드발급대상 : 17세이상 약 40만명

○ 소요예산 : 32억원

○ 카드발급계획 : 98년 4월

※ 제주도에 이어 98년 10월부터 전국 발급

IV. 기대 효과

① 국민편익 측면

- 행정기관에서 주민등록등·초본 및 인감증명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하던 것을 주민카드로 대체함으로써 증명민원의 획기적 개선도모
- 연간 1억7천만통에 이르는 주민등록등·초본,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한 시간과 비용 절감
-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의료보험증 및 국민연금증서를 통합한 주민카드는 위·변조가 거의 불가능하고, IC내에 최신의 정확한 개인정보를 수록 관리할 수 있어 신분증의 휴대가 간편하고 사회 전반의 신용사회 조기구축에 기여
- 의료보험증, 국민연금증서 등의 첨단화 및 개인 휴대화로 사회복지 행정의 고도전산화, 국민복지 향상 도모
-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, ONE-STOP 민원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정보사회에 걸맞는 다양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

② 행정편익 측면

- 민원서류의 대폭적인 감축과 제증명 발급의 무인화로 행정기관의 인력을 대폭 절감하고 대민 행정업무 간소화
- 주민등록증, 의료보험증, 운전면허증, 국민연금증서 등을 통합함으로써 신분증 경신에 따르는 경비절감을 통하여 국가예산의 효율적 운영

③ 사회적 측면

- 최신의 고난도 기술로 신분증을 발급함으로써 사회·경제사범, 미성년자 유흥업소 취업·고용 등 신분증의 위·변조로 인한 사회문제를 제거하여 사회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 마련
- 카드의 분실시에는 즉시 재발급하여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, 분실된 카드의 이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각종 범법행위예방
- 주민카드에 개인의 정보가 저장되어 있으므로 민원인은 개인의 주민카드를 이용 필요한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어 제증명의 무인화를 이룰 수 있고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 받을 수 있음
- IC카드는 보안기능이 뛰어나므로 출입통제, 컴퓨터시스템 통제분야 등에 전자열쇠로도 사용가능
- 진료기관에서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확인 및 환자관리가 용이하므로 자격미확인에 의한 진료비의 사후정산, 무자격진료, 자격상실 후 진료 등 이의신청 업무의 대폭적인 감소가 기대됨
- IC카드 국산화 추진을 통해 반도체 및 관련산업의 육성과 이에 따른 국가 경쟁력 제고

-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연계로 정보사회 진입을 가속화시키며 최첨단 전자신분증의 휴대 및 사용을 통해 대국민 정보마인드 확산
- 복합적인 신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H/W 및 S/W의 수요증가로 정보산업 육성 계기 마련
- 읍면동에서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타기관의 자료도 제공받아 민원인에게 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, 향후 초고속 정보통신망이 각 가정에까지 구축되면 민원인이 행정관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각자의 집에서 행정기관의 각종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
- IC카드내의 의료보험증과 의료보험 전산망을 이용 진료예약 등 연계서비스를 창출하며, 또한 환자가 직접 병원에 가지 않고 고속통신망을 통하여 가정에서 전문의사의 처방과 진단을 받을 수 있음
- 교통부분의 전산화
 - 주민카드를 자동차등록 및 자동차보험업무에 활용하여 해당기관에 방문할 필요없이 가정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등록 및 보험료납부 서비스를 창출
- 조세신고 및 납부의 전산화
 - 조세전산화 시기에 맞추어 주민카드를 이용 가정에서 소득세, 취득세 등 세금에 대한 자진신고를 하며 Home Banking을 통해 납부하는 서비스 개발

- 휴대용 면허확인기를 이용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자동발부하여 범칙금 누수방지 및 인력, 예산 절감
- 읍면동의 주민등록표원장 작성 폐지
 - 본인확인을 위해 현재까지 이중으로 관리하던 주민등록 관리제도를 사진의 DB구축을 계기로 전산화일로 일원화 함으로써 읍면동의 업무량 감축 및 행정의 효율성 도모
- 전국 어디서나 인감증명서 발급
 - 전출입시 인감대장이 우편으로 도착될 때까지 발급이 지연되던 인감이 전산화되고 주민카드에 수록되므로 인해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나 즉시 발급가능
- 각종 민원처리 업무의 간소화
 - 전출입, 출생, 사망 등 신상변동사항의 신고 일원화
 - 의료보험증의 유효기간 검인제도 개선
 - 주민카드 의료보험사항 기록 및 변경 처리 개선
 - 보험급여비 청구 제도개선 등
- ONE-STOP 민원서비스 체제 기반구축
 -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 완료되고 공공기관이 이에 수용될 경우, 주민카드를 본인 확인 매체로 하여 민원인이 원하는 모든 증명서류를 언제 어디서든지 자동으로 손쉽게 발급

V. 主要爭點事項 및 對策

① 法的根據 및 國民同意

쟁점사항	대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법적근거 미비 • 국민동의 필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현행 개별법령에 근거 증명경신 사업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법, 도로교통법 등 - 법령개정은 증명의 전산서식, 운영절차 등이 확정된 후 가능 • 주민등록법 등 개정(안)에 제반사항 반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'97. 3. 7 주민등록법개정(안) 입법예고 -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의견 수렴 반영 - 특히, 전문가 토론회를 수시 개최 - 국회에서 법안 심의시 중점 검토 • 법개정은 기존 법률 개정방향으로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카드는 주민등록증 등 현재 증명을 경신하는 것으로 새로운 제도는 아님 - 각 증명의 운영절차를 개별 법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운영상 혼란 방지 - 특별법 제정은 중복규정으로 비효율적 ※ 개인정보보호 규정은 별도법령 존재 <p><주요개정내용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카드 발급 및 발급센터 설치근거 - 정보집중 및 방지 관련규정 - 주민카드 정보악용 처벌규정 등 ※ 주요 개정내용 별첨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카드에 관한 특별법 제정 	

② 情報集中

쟁점사항	대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보집약의 법적 근거 미비 집중된정보의 위험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정보악용 - 감시통제 	<p><기술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제경신후 정보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디스크 저장자료 완전삭제 - 디스크 재설계로 자료복구 차단 <p><제도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법 개정(안)17조의8에 규정 신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카드 발급센타 설치근거 - 정보의 타용도 사용제한(공안용 불가) - 일제경신후 정보분산 규정

③ 私生活 侵害, 監視, 統制

쟁점사항	대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번호, 지문은 통제용도 안기부 등 국가 권력의 정보악용 	<p><기술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허가자의 정보이용 불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자서명 및 보안키 사용 <p><제도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제도는 행정과 민원의 근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세, 병역, 국가 인적자원관리의 기초 - 증명은 국가공증제도, 실명확인 근간 주민등록정보는 관련법에 근거 제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감시, 통제 용도의 정보제공은 불가 지문은 과학적인 신분확인 제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대형사고, 수배자 색출 등 이용

④ 個人情報流出

쟁점사항	대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커, 내부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생활 침해 및 피해 심각 보안시스템 취약 분실카드 악용 및 정보유출 	<p><기술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해커침입 방지장치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방화벽, 공중망과 분리된 전용망 사용 모든 정보처리내역·담당자·시간 기록보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업무별 자료 분리구축, 정보집중 방지 - 시스템 운영자별 보안카드 지급 주민카드 위·변조 및 악용방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인별 비밀번호 사용 - 주민카드의 정보전송 암호화 처리 - 주민카드 보안키 및 잠금장치 내장 - 주민카드 도안 화폐수준 비표처리 <p><제도적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법 제21조제2항5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출시 3년이하 징역, 300만원이하 벌금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제23조2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유출시 3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하 벌금 형법 314조, 316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해킹시 5년이하 징역, 1천만원이 벌금 국가배상법 제2조, 민법제750조, 751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피해배상·보상규정 주민등록법 제21조2항 신설(처벌규정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카드 무단열람자·불법사용자·위·변조자는 3년이하 징역

5 프라이버시 保護權

쟁점 사항	대책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OECD의 프라이버시 보호권 위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정보파일에 비밀번호 수록 금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별법령에 의거 주민이 신고한 정보만 관리 • 뚜렷한 목적하에 정보수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법, 도로교통법 등에 근거 - 주민등록, 운전면허 등의 제도운영을 위해 수집 ※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법률 • 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하에 수집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이 신고하면서 동의한 사항 - 정보통합에 의한 수집은 각 개별법을 개정 근거규정 신설 • 정보주체의 정보공유 거부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주민등록, 운전면허 등의 정보는 주민이 사회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사항 - 특히, 주민등록제도는 조세, 병역 등 국가 존립과 신분증명을 위해 필요 • 정보수집 이전에 법규제정 선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개별법령 근거 규정 존재 - 정보통합에 관한 규정은 법개정시 반영 ※ 법개정후 정보통합 예정 • 정보주체의 자기정보 열람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언제든지 열람가능